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20

춘 천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6구합5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

원 고 A교회

피 고 [redacted]군수[1)]

변 론 종 결 2016. 11. 25.

판 결 선 고 2016. 12. 16.

주 문

1. 피고가 2015. 8. 3.[2)]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,178,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) 이 부분은 '[redacted]도[redacted]군수'로 기재되어 있으나 '[redacted]군수'의 오기로 본다.
2) 원고는 이 부분을 2015. 8. 6.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2015. 8. 3.의 오기임이 명백하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20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1. 5. 2.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원고 대표자인 B으로부터 증여받고, 2011. 5. 12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2011. 5. 9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시설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,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.

다. 피고는 출장 조사, 과세예고, 과세전 적부심사 등을 거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. 8. 3. 면제받은 취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10,178,690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(이하 위 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을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. 11. 2.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6. 6. 13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6호증, 을 제1 내지 7, 9,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가.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,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20

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,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.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,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,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,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(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두45703 판결 등 참조).

나. 갑 제1호증, 을 제2, 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액 10,178,690원은 본세 7,664,100원에 가산세 2,514,590원을 합산한 것인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발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,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, 부과된 가산세의 종류 및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,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보낸 지방세 과세예고 안내문이나,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보아도 본세 및 가산세를 구분하고, 가산세의 종류 및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표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.

다.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,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20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노진영

판사 윤아영

판사 정우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20

(별지)

목 록

1. [redacted]군 C 종교용지 100㎡
2. [redacted]군 D 잡종지 1,157㎡
3. [redacted]군 E 목장용지 1,573㎡
4. [redacted]군 F 잡종지 1,427㎡
5. [redacted]군 G 종교용지 193㎡
6. [redacted]군 H 종교용지 966㎡
7. [redacted]군 I 대 325㎡
8. [redacted]군 J 종교용지 821㎡
9. [redacted]군 K 종교용지 978㎡
10. [redacted]군 D 지상 건물

 [소재지번 및 건물번호]

 [redacted]군 D 제에이동호

 [건물내역]

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제1종근린생활시설 103.56㎡
11. [redacted]군 D 지상 건물

 [소재지번 및 건물번호]

 [redacted]군 D 제비동호

 [건물내역]

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9.4㎡

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21.6㎡
12. [redacted]군 E 지상 철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 368㎡
13. [redacted]군 I 지상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다가구주택 1층 118.15㎡ 2층 118.05㎡

끝.